

◎국토교통부고시제2024-000호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24차) 및 실시계획(25차) 변경 승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24차) 및 실시계획 변경(2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5567),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5),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부(031-200-72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2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나) 공영차고지계획(변경없음)

다) 광역환승시설계획(변경없음)

라) 철도시설계획(변경없음)

마)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바) 주차장계획(변경없음)

사) 자동차검사시설(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라. 개발기간(변경)

○ 사업착수일 : 2008년 7월 11일

○ 사업준공일

기 정	변 경
○ 1단계) 2016년 2월 29일	○ 1단계) 2016년 2월 29일
○ 2단계) 2019년 6월 30일	○ 2단계) 2019년 6월 30일
○ 3단계) 2022년 6월 30일	○ 3단계) 2022년 6월 30일
○ 4단계) 2024년 12월 31일	○ 4단계) 2025년 6월 30일
○ 5단계) 2026년 12월 31일	○ 5단계) 2026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5567),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3), 한국 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5),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부(031-200-72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변경(25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착수일 : 2008년 7월 11일

○ 사업준공일

기 정	변 경
○ 1단계) 2016년 2월 29일	○ 1단계) 2016년 2월 29일
○ 2단계) 2019년 6월 30일	○ 2단계) 2019년 6월 30일
○ 3단계) 2022년 6월 30일	○ 3단계) 2022년 6월 30일
○ 4단계) 2024년 12월 31일	○ 4단계) 2025년 6월 30일
○ 5단계) 2026년 12월 31일	○ 5단계) 2026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www.eum.go.kr>에 게재

※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5567),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3), 한국 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5),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부(031-200-72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